

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7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김경훈, 김규남,
김성준, 김영철, 김용일,
김인제, 남창진, 민병주,
박강산, 박상혁, 박승진,
박영한, 봉양순, 서상열,
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
윤기섭, 윤종복, 이영실,
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
임종국, 정준호, 한·신,
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유니버설디자인의 확대와 체계적 적용을 위해 공공주택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공공주택을 포함함(안 제7조제5항 개정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호 중 “복지시설, 교육시설, 체육시설” 을 “복지시설, 교육시설, 체육시설, 공공주택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 행정 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·공간·시설 등에 적용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<u>복지시설, 교육시설, 체육시설</u>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7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<u>복지시설, 교육시설, 체육시설, 공공주택</u> ----- -----</p>